[붙임 1]

교원자격증 무시험검정 안내

□ 근거법령

○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별표2]

초·중등· 특수학교 정교사 1급 자격증 발급 대상자

자격 / 학교별	초·중등·특수학교 정교사 (1급)
중등학교	1. 중등학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2.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증을 가지지 아니하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후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중등학교 정교사(2급)자격증을 받은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3.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4. 교육대학·전문대학의 교수·부교수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초등학교	1. 초등학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2.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교육경력이 3년 이상이고, 방송통신대학 초등교육과를 졸업한 사람 3.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초등교육과정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특수학교	1. 특수학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2. 특수학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3.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1급)자격증을 가지고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 4.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전문상담교사 1급 자격증 발급 대상자

자격 / 학교별	전문상담교사 (1급)
중등학교 초등학교 특수학교	1.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유아교육법」에 따른 2급 이상의 교사 자격증을 포함한다)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이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일정한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마친 사람 2.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전문상담교사 경력을 가지고 자격연수*를 받은 사람

○ 「유아교육법」 제22조 제2항 [별표2]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증 발급 대상자

자격 / 학교별	유치원 정교사 (1급)
유치원	1. 유치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2. 유치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유치원 교육과정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자격연수를 받은 사람’,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사람’이라 함은 시교육청에서 실시하는 1급 정교사 자격연수를 받은 사람을 뜻함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 「유아교육법」 제22조의2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유아교육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교사 자격 취득 결격 사유 관련 유의사항

○ 대상: 정교사(1, 2급), 전문상담·보건·영양·사서교사(1, 2급), 실기교사, 준교사

○ 결격사유 확인주체

- (마약)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자격증 신청하는 개인이 검사 후 제출
- (성범죄) 미성년자, 성인에 대한 성폭력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신청 대상자에 대해 교육청이 조회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의사 진단서 1부

- 법무부 지정 전국 의료기관*에서 마약류 검사 가능 여부 사전문의 후 검사 가능

 * www.hikorea.go.kr에 탑재된 [정보조회]-[법무부지정 의료기관 조회] 참조

- 검사결과통보서·진단서 등 발급 가능 여부, 검사방법 및 비용, 판정 소요기간 등은 의료기관마다 상이하므로 반드시 사전문의 필요(붙임4참고)
- 일부 치료목적 약물 복용자는 '양성' 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

※ 서류 유효기간: 교사자격취득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검진·발급된** 경우 인정 가능

□ 교원자격증 발급 관련 유의사항

○ (교육경력) 1년 이상 혹은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라 함은 정규 교원과 같이 1주당 40시간(1일 8시간) 및 1주당 6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시간제로 근무한 기간제 교원(교육행정기관 순회교사 포함)으로 근무한 경력만 인정

- 강사(시간, 영어회화, 방과후, 교과교실제, 스포츠, 전일제 등) 경력 제외
- 자격 과목 이외의 과목으로 근무한 모든 교육 경력 제외

※ 대학원 재학기간(휴학, 논문 작성 기간 등 포함, 수료 후 졸업 전까지의 기간은 논문 작성 기간으로 간주)은 교육경력에 산입하지 않음

※ 인정 대학원: 교육대학원**(일반대학원은 불가)**
서울대학교 대학원,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교육전문대학원으로 **설치·승인** 받은 교육대학의 대학원

○ (교육경력 인정)

▶ 유치원 1급 2호, 중등학교 1급 1호, 초등학교 1급 3호, 사서교사 1급 2호 특수학교 1급 2호 및 4호 교육대학원 전과 졸업 후의 교육경력 합산

▶ 전문상담교사 1급

- 2015년 이전 교육대학원 입학자: 교육대학원 기간을 제외한 3년 이상의 교육경력 확인이 가능한 경력증명서
- 2015년 이후 교육대학원 입학자: 교육대학원 입학 전 3년 이상의 교육경력 확인이 가능한 경력증명서

 *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 중 현직교원을 위한 비학위과정은 2009학년도까지만 운영하며, 2010년도부터 운영 폐지함

※ 중등, 특수(중등),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의 경우 경력증명서에 임용과목 미기재시 교육경력 불인정(필요시 행정실에 수기 발급 요청)

※ 유치원 정교사(1급),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1급), 전문상담교사(1급) 무시험검정의 경우: 유치원 자격증 취득 이후의 어린이집 교육경력은 인정

○ (석사학위 전공) 무시험검정 자격증 취득을 위한 전공은 아래와 같음

▶ 유 치 원: 교육대학원에서 유치원 교육과정(유아교육전공)을 전공

▶ 초등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초등교육과정(초등교과교육 관련 전공)을 전공

▶ 중등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취득하려는 표시과목 관련 전공

○ (부산을 제외한 타시도 사립학교 경력) 타시도 사립학교 교육경력은 해당 관할 교육청에서 발급한 경력확인서만 인정(사립학교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불인정)

○ (호봉 관련) 정교사(1급) 자격취득에 따른 자격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경력의 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합산하여 호봉 재산정 가능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 교육부 예규

○ (처리기간) 15일(교원자격검정 시행규칙 [별표 제4호 서식])

□ 제출서류

초·중 특수 정교사(1급) 자격증	유치원 정교사 (1급)
1. 무시험 검정원서 (붙임3 별도파일) 2. 교육대학원 졸업증명서(또는 석사학위 수여증명서) 원본 3. 교육대학원 성적증명서 원본 4. 2급 정교사 자격증 사본 5. 경력증명서 원본 6. 재직증명서 원본 7.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붙임4 파일 참고) **※ 상기 초중등교육법 21조 2항 [별표2] 특수학교 4호인 경우 반드시 특수교사자격증이 아니라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자격증 제출** **※ 경력증명서에 임용 과목 미기재시 교육경력 불인정**	1. 무시험 검정원서 (붙임3 별도파일) 2.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수여증명서 원본 3. 교육대학원 성적증명서 원본 4. 경력증명서 원본 5. 재직증명서 원본 6. 유치원 2급 정교사 자격증 사본 7.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붙임4 별도파일)

전문상담교사 1급
1. 무시험 검정원서 (붙임3 별도파일) 2. 교원자격증 사본 **3. 경력증명서 원본(중등 교원자격증인 경우 교과목 기재)** 4. 학위수여증명서 원본 5. 성적증명서 원본 6. 1급양성과정이수증명서 원본 7. 중등2급 상담 미검정 확인서 원본 8.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붙임4 별도파일)

☞ 서류는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할 것(**교원자격증만 사본 가능**)

☞ 주민등록번호, 개명 등으로 인해 자격증 내용 확인이 어려울 시에는 주민등록초본 제출

□ 사서교사 1급 등 위에 기재되지 않은 자격증을 신청하시는 분은 교육청 교원인사과로 서류 문의

○ 중등학교, 특수학교(중등): ☎860-0455

○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중등외), 비교과: ☎860-0454